

정보처리에 있어 윤리적 판단에 관한 실증적 연구

최무진

계명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
(choimjin@kmucc.keimyung.ac.kr)

기업의 경영자들은 수많은 종류의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여 경영활동과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경영자들이 이러한 정보와 자료를 기록, 보고, 배포할 때 자신의 행동이 자신이 소속된 조직과 동료 그리고 자신에게 미칠 영향을 도덕성과 법적인 측면에서 나름대로 평가한 후 실행을 하게 된다. 이러한 판단을 내릴 때 경영자들은 회사의 정책이나 관행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며, 그러한 것들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자신의 주관적 판단과 경험을 근거로 행동하게 된다. 그러나 경영자들의 판단과 그 기준들은 때로 일관성이 결여되며, 개인의 주관적 가치관과 이권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아 정보처리에 대한 경영자들의 윤리성과 준법성의 일관성 있는 판단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영자들의 일반적인 정보처리행위에 대한 윤리적 판단과 태도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여러 유형의 가상적 정보처리상황을 경영자들이 판단함에 있어 경영자의 업종(industry), 연령(age), 교육수준(educational level), 경력(job experience)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금융업, 제조업, 유통업에 종사하는 252명의 경영자들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 첫째, 업종, 연령, 교육수준, 경력에 따라 정보처리상황에 대한 경영자들의 판단이 차이를 보였으며, 그 차이의 정도는 매우 다양했다. 4 변수 중에서 교육수준이 경영자의 판단에 관한 가설들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경영자들이 정보처리상황에 대한 윤리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혼돈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제시된 정보처리상황이 자신의 이익에 배치되거나 자신의 위치를 반영한 경우 비합리적 판단도 행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영업비밀(trade secret)이나 고객정보의 누출과 같은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도 매우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본 연구는 그간 수행된 바 있는 컴퓨터범죄 및 전산자원활용에 대한 경영자(사무직원)들의 윤리의식조사가 아닌 경영활동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편적 정보처리행위에 대한 경영자들의 윤리 및 준법의식을 처음으로 조사하였는데 그 학술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각종 정보와 자료를 다루는 일반 직원들의 윤리 및 준법의식수준을 가늠할 수 있어 취약한 정보윤리영역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 연구의 축적은 직원들의 정보처리에 관한 건전한 의식을 함양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지침의 수립과 교육자료의 개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 서 론

기업의 경영자들은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활용하여 경영활동과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경영자들이 정보를 취득, 기록, 보고 및 배포를 할 때, 그 행위가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와 파급효과를 지니는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영자들, 특히 정보윤리가 취약한 경영자들은 정보의 취득, 보고 그리고 배포함에 있어 개인의 이기적 이권과 편향된 가치관에 투영시켜 정보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기득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의 흐름을 차단하거나, 정보처리결과에 대해 무관심하여 정보보안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몇 년전 극악무도한 범죄집단이 자신들의 범행대상 리스트가

모 백화점의 전산실에서 유출된 고객구매자 명단이 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져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은 일반 직원들이 무책임하게 사내 정보를 처리하고 있음을 알린 계기가 되었다. 이 외에도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건을 아니라해도 공신력을 최우선으로 해야하는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적 정보유출, 각 기관에서의 정보기재의 오류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를 적지 않게 목격되고 있다(예: 국민일보 98. 4. 16, 조선일보 95. 12. 19 보도 등).

실제로 다양한 정보처리상황에서 경영자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하자없는 판단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reference)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의 여지는 많다. 흔히 경영자들이 정보를 처리할 때 소속된 조직의 정책이나 관행 또는 지침을 참조할 것이나, 만일 그러한 분명한 방향과 지침을 찾기 어려울 경우에는 결국 자신의 주관적 가치관에 근거한 판단과 개인적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영자의 판단과 그 판단의 증거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개인의 주관과 이권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아 정보처리에 대한 경영자들의 일관된 윤리성과 준법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경영자의 판단과 행위가 조직과 사회의 도덕적 기준, 관례 그리고 실제 법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적합한지 분명하게 규명짓기가 어려운 정황이 많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도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에 대한 판결을 획일적인 규정에 의거하기 보다는 일반대중의 보편적 태도에 근거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최종 판결은 그 판결의 수용가능 여부에 대해 사회가 합의되는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Branscomb, 1988). 그만큼 정보처리행위의 도덕성과 준법성을 판단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획일

적인 증거는 찾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정보처리행위의 도덕성과 적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상황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포기하고 결국 부정확한 회계기록, 정보채널의 왜곡,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유출, 극비정보의 전출 등과 같은 비윤리적이며 불법적인 행위가 자행되며, 이는 개인과 조직의 명예의 실추와 재정적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 제조업체인 미국의 GM(General Motors)사와 독일의 Volkswagens사는 GM의 한 중역이 Volkswagen으로 이적하면서 영업기밀(trade secret)(GM사의 유럽지역 협력업체 목록과 부품의 공급단가 등)을 가져가서 활용한 행위가 있었는데, 이러한 행위의 위법 여부를 가리기 위해 두 기업들이 4년간 법정공방을 하면서 지출한 재정적 손실과 관련 중역들의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Fortune, April 14, 1997). 이러한 사건은 두가지 의미를 가지는 바, 첫째, 조직구성원을 통한 기업간의 정보이전은 상호호혜적인 차원에서 악의적이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경영자들이 그러한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경향이 높다. 흔히 정보유출과 이전에 따른 분쟁은 이전된 정보의 중요성 이외에도 관련 기업들의 감정적 대응이 행위의 비도덕성과 위법성을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다. 둘째, 사안에 따라서 행위의 위법여부를 판정하는 일이 대단히 어렵다. 특히 분쟁의 대상이 된 정보가 특수지식이나 경험과 같이 무형일 경우, 정보의 소유권에 대한 고용주와 피고용주 사이에 선을 긋는 일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미국은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EEA)를 책정하여 기업 또는 개인 간 지적재산권 분쟁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 법안은 기업의 영업기밀(trade

secret)을 훔치는 행위는 연방법에 저촉되며, 첩보 행위 (espionage)가 성립되면 최고 15년 징역, 50만불 벌금을 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Fortune, Sep. 8, 1997).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일반 경영자들이 경영활동과정에서 수행하는 일반적 정보처리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의 윤리적 그리고 준법적 판단을 적용하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본 연구는 국내 경영자들이 실제 경영활동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처리상황을 판단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도덕적, 준법적 기준을 적용하는지를 조사하였다. 한걸음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이러한 경영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많은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연구자가 자의적으로 선정한 4 변수, 즉 경영자의 업종(industry), 연령(age), 교육수준(educational level), 경력(job tenure)이 경영자들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함으로써

이러한 연구의 가능성을 보여주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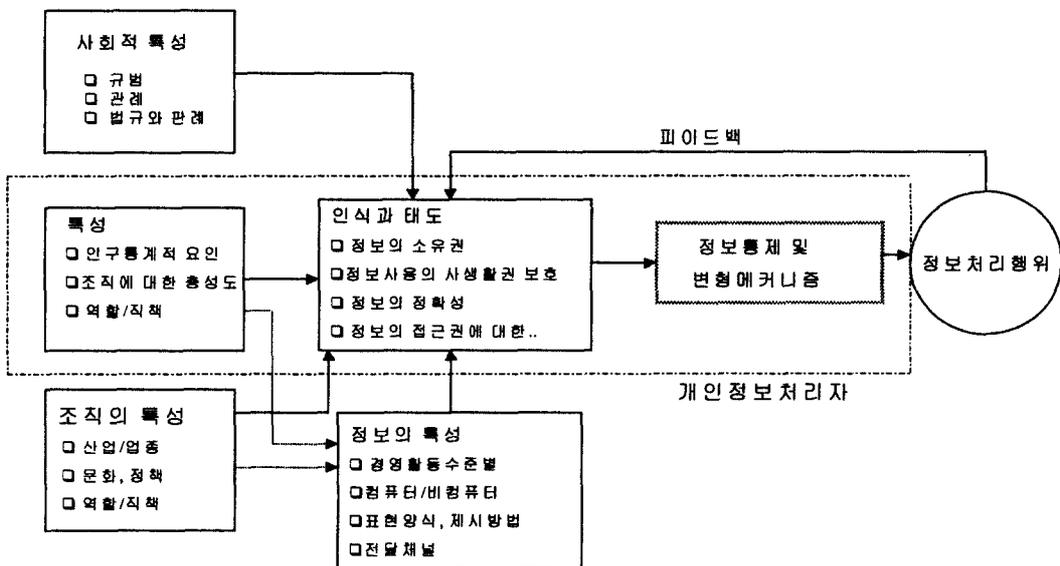
본 연구를 통해 국내 기업 경영자들이 정보처리에 적용하는 윤리적, 준법적 수준을 탐색함으로써 정보화시대에 절실히 요구되는 정보윤리교육의 한 계성을 짚어보고, 경영자들의 정보윤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체계적 국내 연구의 필요성과 그 방향도 논의하고자 한다.

II. 문헌연구와 가설설정

본절에서는 정보처리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문헌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가 검정하고자 하는 가설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림 1>은 개인의 정보처리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과 각 요인들 사이의 관계를 요약해

<그림 1> 정보처리행위에 미치는 요인



서 보여주고 있다. 제시된 요인 이외에도 많은 요인들이 더 부가될 수 있음을 밝혀둔다.

개인이 정보의 소유권, 정보사용의 사생활보호, 정보의 정확성 그리고 정보에의 접근권에 대해 가지는 인식과 태도(perception and attitude)는 정보처리자의 정보통제 및 변형메커니즘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최종적으로 정보처리행위를 결정짓는다. 정보통제 및 변형메커니즘은 입수한 정보를 기록, 변형, 보고, 배포를 할 때 정보처리자가 활용하는 총체적 정신적 블랙박스(mind blackbox)로써 판단에 필요한 증거, 알고리즘 및 휴리스틱으로 구성된다.

Mason (1986)은 정보윤리를 사생활보호(privacy), 정확성(accuracy), 소유권(property), 접근성(accessibility), 4 영역으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정보의 사생활보호는 개인정보를 어떠한 제공조건과 안전장치하에서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는지를 문제삼으며, 정확성 문제는 정보의 신빙성, 사실성, 정확성에 관한 책임소재에 관한 문제로써 정보가 부정확하여 발생하는 사태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하는지에 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정보의 소유권 문제는 특정 정보의 소유권의 소재와 교환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정한 시장가격에 관한 문제라 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정보에의 접근성은 어떤 개인과 조직에게 어떠한 정보에 접할 수 있는 권리와 도구를 제공하는가에 관한 문제들이다. 이러한 네(4) 정보윤리영역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태도는 개인의 정보통제 및 변형메커니즘을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정보처리자의 인식과 태도는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와 조직의 특성 그리고 개인의 개별적 특성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개인이 접하게 되는 정보의 특성 역시 정보처리자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Zaki와 Hoffman (1988)에 의하면 정보사용자는 자신의 조직내 역할(role)에 따라 정보가 지니는 가치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뿐 아니라, 그 정보를 얻거나 배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다르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동일한 정보를 기록, 보고 또는 배포함에 있어서 경영자들은 각자의 상이한 통제 및 변형 메커니즘을 적용하는 것이다. 특히 Culnan (1993)은 2차적 개인정보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는 i)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두려움, ii) 개인정보를 사용함으로써 기업이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익에 대한 인식, 그리고 iii) 기타 인구통계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인사고과과정(personnel selection process)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정도에 대한 개인의 견해(태도)는 조직이 그 선발과정을 위해 모으는 정보의 종류에도 영향을 받는다 (Rosenbaum, 1973).

한편 Constant 등(1995)은 직원의 정보공유(정보처리행위의 일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개인적 요인 외에 조직의 문화, 정책을 들고 있다. 직장내 동료와 조직에 대해 호감을 가진 직원일수록 정보공유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정보공유에 필요한 선의의 시민의식(good citizenship)은 개인의 조직에 대한 몰입도와 동료와의 유대감과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O'Reilly and Chatman, 1986). 한편 유형적(tangible) 정보(문서 및 보고서)의 공유태도는 직원의 친사회적(prosocial) 태도와 정보에 대한 조직의 소유권에 대한 규범에 영향을 받는 한편, 무형적(intangible) 정보(전문지식, 아이디어)의 공유태도는 직원의 자발적 표현욕구(self-expressive needs)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어

면 조직은 산업기밀누설이나 본연의 업무로부터 주의력이 산만에 질 것과 역할갈등이 야기될 것을 우려하여 정보공유를 억제하는 한편, 어떤 조직은 선의의 시민정신과 자발적 지원문화를 창달한다는 취지하에 정보공유를 장려하기도 한다 (Grover, 1993). 따라서 Grover는 정보에 대한 조직의 문화와 정책 그리고 규범이 정보의 유형과 함께 정보처리자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정보처리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Feldman과 March (1981)는 정보를 표현양식, 제시방법, 보유자 또는 통신채널로부터 분리시켜 인식될 수 비활성적 상품(inert commodity)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즉 사람은 문서와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은 유형적 정보 ("product")와 지식, 경험, 기술 (타이핑, 승마, 프로그램 오류수정)과 같이 인간의 기억에 담겨있는 무형적 정보 ("expertise")를 구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보에 대한 민감성 측면에서 보면 개인의 의료 및 재정정보가 다른 어떠한 정보보다 민감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의 특성도 정보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Zeffane과 Cheek(1995)는 개인과 조직의 특성이 경영자가 사용하는 정보의 유형(written, computer-based, verbal information)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여 흥미롭다. 직위(관리자 또는 비관리자)와 직장경력 역시 정보사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경력이나 업무교육을 많이 받은 직원일수록 직원이 소유하고 있는 정보를 조직의 소유물로 간주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비관리자(non-manager)에 비해 관리자(manager)가 컴퓨터기반 정보를 더 많이 활용하였다는 것이다 (Constant et al., 1994). 그리고 보험업종만 제

외하고 프라이버시 침해를 감수하면서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 소비자의 태도는 업종마다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따라서 정당한 정보사용(fair information use)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는 산업업종에 따라 달랐다 (Westin, 1991). Stone 등 (1983)도 (i) 조직 유형이 개인이 정보에 대해 가지는 프라이버시 가치관, 신념, 태도, 행동적 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ii) 그러한 변수들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개인이 정보에 대해 가지는 프라이버시 가치관, 신념, 태도, 행동적 의도가 조직유형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아울러 Fromkin 등(1979)의 연구는 조직이 모이고, 저장하고, 사용하고 방출하는 정보의 유형에 대한 개인의 신념은 그 개인의 조직내 역할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요약컨데 Zaki와 Hoffman (1988), Zeffane과 Cheek (1995), Stone 등 (1983)은 개인의 조직내 역할(직위), 직장경력과 같은 개인적 요인이 정보처리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Constant 등 (1995), Westin (1991)은 산업업종, 조직의 문화 및 정책이 정보처리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는 개인의 특성에 관한 변수(연령, 교육수준, 경력)와 조직의 특성변수인 업종이 정보처리자 즉 경영자의 정보의 소유권과 정확성에 대한 경영자의 윤리적, 준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아울러 경영자의 윤리적, 준법적 판단이 2가지 정보윤리영역(정보의 소유권과 정확성)과 5 유형의 정보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5 유형의 정보는 i) 전략적 기획정보, ii) 관리적 통제정보, iii) 운영적 통제정보, iv) 개인정보, v) 비정형적 정보이다. 처음 3 유형의 정보는 경영활동의 수준을 전략적 계획, 관

리적 통제, 운영적 통제로 나눌 경우에 각 경영활동의 특성을 반영하는 정보들이다. 설문에서는 전략적 기획정보로써 매출 및 시장점유율, 구매전략을, 관리적 통제정보로써 평당 매출액을, 운영적 통제정보로써 재고정보 및 입찰정보를 설문지에서 사용하였다. 개인 정보란 사적인 정보를 말하는데, 개인의 동의없이 사적인 정보를 사용하는 어떠한 행위도 프라이버시침해로 간주된다. 개인정보의 예는 개인인사자료와 대학 졸업생 명단을 사용하였다. 비정형적 정보는 문서화되지 않은 사실, 소문, 구두 정보로써 정규 관리체계를 통해 유통되지 않는 정보이지만 때로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비정형적 정보의 예는 기업신용에 관한 소문, 품질개선 아이디어를 사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총 40개의 가설(4개의 독립변수 x 2개의 정보유리영역 x 5가지 정보유형)을 설정하였다. 40개의 가설을 모두 서술하기에는 지면이 허락치 않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기 때문에 몇가지 가설을 예로써 아래 서술하였다. 각 요인별 수준(level)들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차이의 방향성을 가설에 기술하지 않은 이유는 차이의 방향을 사전에 예측하기가 어려운 탐색적 연구였기 때문이다 (부록 A 참조).

- H1.1 전략적 기획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경영자들의 판단은 업종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 H7.2 관리적 통제정보의 소유권에 대한 경영자들의 판단은 연령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 H10.4 비정형적 정보의 소유권에 대한 경영자들의 판단은 교육수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요인별 차이의 유의도를 검정하기 위한 독립변수로써 업종 (industry) 과 3가지 인구통계적 변수, 즉 연령, 교육수준 그리고 경력을 포함하였다. 업종의 경우, 본 조사에서는 금융업, 제조업 그리고 유통업이 포함되었는데, 이들 업종들은 법적 환경, 고객 유형 그리고 운영적 특징이 상당히 상이할 것으로 추측되어 소속된 경영자들의 정보유리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포함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연령, 교육수준 그리고 경력은 <표 1>과 같이 그 통상적인 방법으로 그 수준을 정하였다.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설문지를 통한 직접조사방법을 택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설문지를 직접 개발하였으며, 연구목적에 위한 설문지의 적합성을 검정하였다.

3.1 설문지 개발

연구자가 개발한 설문지는 부록 B에 제시하였다. 총 10개 항목은 일상적인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상적 정보처리상황을 서술한 소형사례들이다. 각 항목은 경영분야 전문잡지, 신문 그리고 경영자와 실질적 면담을 통하여 얻은 정보를 설문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하였기 때문에 실제적 사실을 근거하고 있다. 설문참여자는 각 설문(소형사례)에 대해 (1) 불법이다, (2) 비윤리적이다, (3) 정당한 행위이다, (4) 정당하지 않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5) 판단하기 곤란하다. 이 5개의 응답 중에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정보처리에 대한 법적, 윤리적 판단을 하도록 요청하였다. MIS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정보윤리를 교수하기 위해 사용되어온 시나리오 또는 소형사례(mini-case) 접근방법은 효과적인 교육방법임이 여러 문헌에서 입증된 바 있다 (Constant et al., 1995; Couger, 1989). 따라서 경영자들의 정보윤리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소형사례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전문경영인 5인과 MIS전공 교수 5인에게 본 설문문의 내용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주도록 요청하였으며, 이들의 의견을 1차 설문지수정에 반영하였다. 이어 20명의 경영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pilot survey)를 실시한 후, 설문문에 대한 이들의 의견도 설문지 수정에 반영하였으며, 이들의 응답은 최종 통계분석에 포함시켰다. 설문항목의 내적 신뢰도(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를 알아보기 위해서 MIS를 전공하는 2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반복테스트(test-retest)를 시행한 결과, 10항목의 신뢰계수 (Cronbach coefficient α)는 0.61에서 0.74에 이르렀다. 일반적으로 0.7이상의 신뢰계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설문항목의 신뢰계수들이 만족스런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와 같이 신규로 개발된 설문지를 사용하는 탐색적 연구의 경우, 최소 신뢰계수를 0.6까지 허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근거로 할 때 본 연구를 위해 설문지를 사용하는데 있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Nunally, 1978; Flynn et al., 1990).

3.2 응답자의 선정과 조사실시

설문조사는 본 연구자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의

경영대학원과 최고경영자과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총 55명의 학생으로 하여금 본인을 포함하여 본인이 재직중인 기업내에서 직급을 달리한 3-5명의 경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연구자에게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연구자는 제출된 설문지의 완성도와 정확도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총 252개의 통계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설문지를 얻었다.

IV. 결과 및 토론

40개의 가설의 설명을 위해 40개의 표를 모두 제시하는 일은 본 논문을 실속없이 길게 만들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일로 생각되어, 요인들의 수준들(level)들간에 현저한 대조와 유익한 토론 및 의미를 수반하는 관계들만을 선별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하였다. 토론의 내용이 통계분석결과와 밀접하게 연계되는 관계로 분석결과와 토론을 분리하지 않고 연계하여 서술하였다. 그러나 관계들의 통계적 유의성과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를 분명히 구분하여 서술하고자 노력하였다.

4.1 응답자의 특성

〈표 1〉은 252명 응답자의 특성들을 요약하고 있다. 응답자는 제조업, 금융업, 그리고 유통업에 종사하는 경영자순으로 많았다. 30-39세의 경영자가 다수를 이루었으며, 고등학교 내지 대학을 졸업한 경영자들이 92.5%를 차지했다. 총 201명(79.8%)의 응답자가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대다수의 응답자가 설문에 설명된 가상

〈표 1〉 응답자의 특성

업 종	금융업	74 (29.4)	교육 수준	고등학교	108 (42.9)
	제조업	118 (46.9)		대 학	125 (49.6)
	유통업	60 (23.7)		대 학 원	17 (6.8)
		기 타		2 (0.7)	
연 령	20 - 29	44 (17.4)	경 력	5년 이하	51 (20.2)
	30 - 39	116 (46.0)		5 - 10	100 (39.7)
	40 이상	92 (36.5)		10년 이상	101 (40.1)

註. 괄호내 수치는 %임

〈표 2〉 전략적 기획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판단

응 답 업 종	불법이다	비윤리적 행위이다	정당한 행위이다	정당하지 않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판단하기 곤란하다
금융업	14(19.2)	31(42.3)	1(1.9)	27(34.7)	1(1.9)
제조업	7(6.0)	85(72.3)	0(0.0)	25(20.5)	1(1.2)
유통업	9(14.3)	26(42.9)	0(0.0)	26(42.9)	0(0.0)
총계	30(12.0)	141(57.0)	1(0.0)	78(31.0)	2(0.0)

시나리오를 충분히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을 정도의 경영실무에 관한 현실감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2 업종별 판단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표 2〉를 보면 금융업과 유통업에 종사하는 경영자들에 비해 제조업의 경영자들이 부정확한 마케팅 정보를 보고하는 행위를 “비윤리적”인 행위로 판단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유통업의 경영자들이 의외로 많은 수가 그 같은 행위를 “정당하지 않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로 판단하는 바, 전략적 기획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낮은 윤리적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세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판단의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부록 A, H1.1 참조).

〈표 3〉에서는 〈표 2〉와는 대조되는 경향을 유통업의 경영자들이 보여준다. 금융업과 제조업에 비해 상품재고량의 부정확한 기재에 대해 “불법적” 또는 “비윤리적”행위로 판단하고 있는 유통업의 경영자의 비율이 현저히 높아 재고량과 같은 관리적 통제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매우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아울러 세 집단간에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판단의 차이가 있음도 보이고 있다 (부록 A, H2.1 참조). 이는 유통업의 경우, 재고부족(out of stock)은 판매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고량 정보의 정확성

〈표 3〉 관리적 통제정보의 정확성에 관한 판단

응답 업종	불법이다	비윤리적 행위이다	정당한 행위이다	정당하지 않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판단하기 곤란하다
금융업	30(40.4)	27(36.5)	0(0.0)	17(23.1)	0(0.0)
제조업	38(32.3)	56(47.0)	0(0.0)	20(16.9)	4(3.6)
유통업	25(42.7)	34(57.1)	0(0.0)	0(0.0)	0(0.0)
총계	94(37.3)	117(46.4)	0(0.0)	37(14.7)	4(1.6)

〈표 4〉 운영적 통제정보의 정확성에 관한 판단

응답 업종	불법이다	비윤리적 행위이다	정당한 행위이다	정당하지 않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판단하기 곤란하다
금융업	46(61.6)	14(19.2)	0(0.0)	14(19.2)	0(0.0)
제조업	68(57.8)	36(30.1)	3(2.4)	10(8.4)	1(1.2)
유통업	23(38.1)	29(47.5)	1(2.4)	7(11.9)	0(0.0)
총계	137(54.4)	79(31.3)	4(1.6)	31(12.3)	1(0.0)

〈표 5〉 개인정보의 정확성에 관한 판단

응답 업종	불법이다	비윤리적 행위이다	정당한 행위이다	정당하지 않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판단하기 곤란하다
금융업	34(46.2)	17(23.1)	0(0.0)	13(17.3)	10(13.5)
제조업	38(32.5)	34(28.9)	3(2.4)	30(25.3)	13(10.8)
유통업	41(69.1)	10(16.7)	0(0.0)	6(9.5)	3(4.8)
총계	113(44.8)	61(24.2)	3(1.2)	49(19.5)	26(10.3)

〈표 6〉 전략적 기획정보의 소유권에 관한 판단

응답 업종	불법이다	비윤리적 행위이다	정당한 행위이다	정당하지 않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판단하기 곤란하다
금융업	20(26.9)	21(28.9)	9(11.5)	21(28.9)	3(3.9)
제조업	27(22.9)	23(19.3)	27(22.9)	37(31.3)	4(3.6)
유통업	6(9.5)	11(19.1)	26(42.7)	17(28.6)	0(0.0)
총계	53(21.0)	55(21.8)	62(24.6)	75(32.3)	7(0.3)

에 보다 민감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표 4〉를 보면 금융업 경영자의 61.6%, 유통업 경영자의 38.1%가 부정확한 입찰정보를 경쟁자에게 유출하는 행위를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유통업 경영자의 47%가 그러한 행위를 “비윤리적” 행위로 판단하고 있어, 그 비율이 세 업종 중에서 가장 높다. 통계적으로도 세 집단의 판단의 차이는 $p=0.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A, H3.1 참조). 추정컨대, 금융업의 경영자 일수록 입찰정보의 유출을 법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있으며, 유통업의 경영자는 도덕적 관점에서 판단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유통업의 경우 많은 종류의 상품들을 구매할 때 입찰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입찰과정에 보다 빈번히 개입한다고 본다면, 부정확한 입찰정보의 누설에 대한 유통업 경영자들의 판단은 훨씬 유보적일 수밖에 없다 하겠다(물론 반대의 경우도 추론해 볼 수 있지만). 사실 입찰정보를 누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행위를 위반한 행위이기 때문에 “불법이다”라고 판단한 경영자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금융업의 경영자들이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공정거래법 제19조 1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1항 참조)..

〈표 5〉는 개인인사정보를 부정확하게 기록하는 행위에 대해 “불법이다”이라고 판단한 경영자의 비율은 유통업의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정당하지 않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대답한 경영자의 비율은 제조업이 가장 높았다. 따라서 세 업종 중에서 유통업의 경우, 개인정보의 부정확한 기재행위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는 경영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개인인사정보의 부정확한 기록행위의 위법여부는 다른 정황적 사항이 고려되어 최종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나 “불법이다”라고 까지 판단한 경영자가 60.1%에 이른다는 것은 다른 업종과 비

교할 때 상당히 의외의 반응이라 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부정확성에 대한 유통업의 경영자들의 극단적 반응 뒤에 숨겨져 있는 원인을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보의 소유권에 대한

〈표 6〉에 의하면 금융업의 경영자일수록 이전 기업에서 얻은 경영 및 영업비밀(trade secret)을 다른 기업에서 활용한 로페스씨의 행위에 대해 거부감(“불법이다”)을 보인 경영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유통업의 경우 가장 낮았다. 특히 유통업의 경영자들의 42.7%가 “정당한 행위”로 응답하였다. 세 집단의 판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을 보였다(부록 A, H6.1 참조). 미국의 EEA(Economic Espionage Act 1996) 규정에 의하면, 최근 이직한 종업원을 고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영업)비밀을 이전 기업 소유주의 동의없이 이직한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기밀을 활용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Fortune, Sept. 8, 1997). 사실 로페스씨가 자신을 고용한 회사를 위해 이전한 정보들은 경영비밀로 분류되기 때문에 1996년 EEA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결이 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비율의 경영자들이 “정당한 행위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어, 상대방의 경영자들이 회사를 옮길 경우 이전 회사의 경영 및 영업비밀을 활용할 의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특히 유통업의 경우 과도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결과는 국내 경영자들이 경영 및 영업비밀의 이전이 가져올 수 있는 도덕적, 법적 문제에 대해 상당히 둔감할 뿐만 아니라 이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으며, 경영자들에게 국내 정보보호법에 대한 교육이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7〉 운영적 통제정보의 소유권에 관한 판단

응답 업종	불법이다	비윤리적 행위이다	정당한 행위이다	정당하지 않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판단하기 곤란하다
금융업	29(40.3)	23(30.8)	0(0.0)	19(25.6)	3(3.9)
제조업	34(28.9)	46(38.6)	10(8.4)	27(22.9)	1(1.2)
유통업	9(14.3)	17(28.6)	4(7.1)	29(47.6)	1(2.3)
총계	72(28.6)	86(34.1)	14(5.6)	75(29.7)	5(2.0)

〈표 8〉 전략적 기획정보의 정확성에 관한 판단

응답 연령	불법이다	비윤리적 행위이다	정당한 행위이다	정당하지 않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판단하기 곤란하다
20 - 29 세	2(4.6)	19(43.1)	0(0.0)	22(50.0)	1(2.3)
30 - 39 세	14(12.1)	67(57.8)	1(0.9)	33(28.6)	1(0.9)
40 세 이상	11(12.0)	57(62.0)	3(3.3)	26(28.7)	1(1.3)
총계	27(10.7)	143(56.8)	4(1.6)	75(29.8)	3(1.2)

〈표 9〉 개인정보의 정확성에 관한 판단

응답 연령	불법이다	비윤리적 행위이다	정당한 행위이다	정당하지 않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판단하기 곤란하다
20 - 29 세	21(47.7)	13(29.6)	0(0.0)	6(2.4)	4(1.6)
30 - 39 세	52(44.3)	27(23.3)	0(0.0)	24(20.7)	13(11.2)
40 세 이상	51(33.7)	31(33.7)	5(5.4)	22(23.9)	3(3.3)
총계	104(41.3)	71(28.2)	5(2.0)	52(20.6)	20(7.9)

〈표 10〉 비정형적 정보의 정확성에 관한 판단

응답 연령	불법이다	비윤리적 행위이다	정당한 행위이다	정당하지 않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판단하기 곤란하다
20 - 29 세	1(2.3)	14(31.8)	5(11.4)	18(40.9)	6(13.6)
30 - 39 세	19(16.4)	34(29.3)	16(13.8)	34(29.3)	13(11.2)
40 세 이상	10(10.9)	41(44.6)	17(18.5)	19(20.6)	5(5.4)
총계	30(11.9)	89(35.3)	38(15.1)	71(28.2)	24(9.5)

〈표 7〉에 의하면 타 업종의 경영자에 비해서 금융업의 경영자들이 판매정보의 상호호혜적 교환행위에 대해 “불법이다”라고 판단하는 비율이 높았던 반면, 유통업의 경영자들은 “정당하지 않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운영적 통제정보의 소유권에 대한 세 집단의 판단은 $p = 0.008$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6〉과 〈표 7〉의 발견은 Grover(1993)의 결론을 통해 부분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Grover(1993)는 유형적 정보(tangible information)를 공유하는 행위는 직원들의 친사회적(prosocial) 태도와 정보에 대한 조직의 소유권에 대한 규범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이는 조직구성원의 정보 공유에 대한 동기와 이유가 조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며, 따라서 금융업의 경영자들이 전략적 기획정보(경영 및 영업비밀)와 운영적 통제정보(판매정보)의 소유권에 관해 보다 높은 윤리적 판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업종의 어떠한 요인들이 경영자의 친사회적 태도와 정보의 소유권에 대한 규범을 결정짓는 지는 향후 연구과제가 될 수 있다. 〈그림 1〉에서 제시된 바 있는 조직의 문화, 정책, 규정, 관례, 경쟁적 환경이 우선적으로 연구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업종별 판단을 요약컨데, 상이한 업종의 경영자들은 정보처리에 대한 정확성과 소유권과 관련된 제 시나리오에 상당히 다른 판단을 보였으며, 이는 정보에 대한 가치, 신념 그리고 태도가 조직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Stone 등(1983)의 연구결과를 일부 지지하고 있다.

4.3 연령별 판단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비록 전략적 기획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경영자들의 판단이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부록 A, H1.2 참조),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부정확한 시장정보를 보고하는 행위를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인 행위로 판단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반면에 젊은 경영자일수록 “정당하지 않지만 있을 수 있는 일”로 판단하는 경향이 높았다(〈표 8〉 참조). 이 발견이 의미하는 바는 연령이 높은 경영자일수록 전략적 수준의 시장정보의 정확성에 많은 관심을 보인 반면, 젊은 경영자일수록 이를 당연히 있을 수도 있는 행위로 여긴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표 9〉는 세 집단의 판단이 상당히 대조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세 집단이 $p = 0.006$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부록 A, H4.2 참조). 젊은 경영자일수록 개인적 인사정보를 부정확하게 기록하는 행위를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연령이 많은 경영자일수록 “정당하지 않지만 있을 수 있는 일”로 판단하고 있어 상당히 대조되는 판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표 10〉에 의하면, 젊은 경영자일수록 소문(투머)을 이용하여 상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정당하지 않지만 있을 수 있는 일”로 간주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나이가 든 경영자들은 “비윤리적인 행위”로 판단하는 경향이 높았다. 통계적으로도 세 집단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 발견들이 시사하는 바는 첫째, 젊은 경영자일수록 자신의 개인정보가 타인에 의해서 열람되고 평가되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정확성에는 더 관심을 보이는 한편, 의사결정을 위해 소문(투머)

〈표 11〉 관리적 통제정보의 소유권에 관한 판단

응답 연령	불법이다	비윤리적 행위이다	정당한 행위이다	정당하지 않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판단하기 곤란하다
20 - 29 세	6(13.6)	11(25.0)	4(9.1)	21(47.3)	2(4.6)
30 - 39 세	17(14.7)	37(31.9)	20(17.2)	37(31.9)	5(4.3)
40 세 이상	27(29.3)	34(37.0)	4(4.3)	23(25.1)	4(4.3)
총계	50(19.8)	82(32.5)	28(11.1)	81(32.1)	11(4.4)

〈표 12〉 비정형적 정보의 소유권에 관한 판단

응답 연령	불법이다	비윤리적 행위이다	정당한 행위이다	정당하지 않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판단하기 곤란하다
20 - 29 세	8(18.2)	25(56.8)	4(9.1)	7(15.9)	0(0.0)
30 - 39 세	23(19.8)	63(54.8)	11(9.5)	17(14.7)	2(1.7)
40 세 이상	12(13.0)	40(43.6)	12(13.0)	24(26.1)	4(4.3)
총계	43(17.1)	128(50.8)	27(10.7)	48(19.1)	6(2.4)

〈표 13〉 전략적 기획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판단

응답 교육수준	불법이다	비윤리적 행위이다	정당한 행위이다	정당하지 않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판단하기 곤란하다
고졸	13(12.0)	56(51.9)	3(2.8)	34(31.5)	2(1.9)
대졸	10(8.0)	77(61.6)	0(0.0)	38(30.4)	0(0.0)
대학원졸	4(23.5)	9(52.9)	0(0.0)	3(17.7)	1(5.9)
총계	27(10.7)	143(56.8)	4(1.6)	75(29.8)	3(1.2)

〈표 14〉 관리적 통제정보의 정확성에 관한 판단

응답 교육수준	불법이다	비윤리적 행위이다	정당한 행위이다	정당하지 않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판단하기 곤란하다
고졸	41(38.0)	42(38.9)	1(0.9)	20(18.5)	4(3.7)
대졸	44(35.2)	59(54.4)	0(0.0)	10(8.0)	2(1.6)
대학원졸	9(52.9)	4(23.5)	0(0.0)	4(23.5)	0(0.0)
총계	94(37.3)	114(45.2)	1(0.4)	35(13.9)	7(2.8)

을 활용하는 등의 비정형적 정보의 정확성에는 다소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 경우가 많았다. 둘째, 연령이 많은 경영자일수록 개인정보 및 소문(루머)의 정확성을 윤리적 관점에서 보는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특히 개인정보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여하튼 법적으로 허위사실임을 알고서 고의로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을 훼손하는 일은 신용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11.9%의 경영자들만이 하자가 없는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정보의 소유권에 대한

〈표 11〉은 관리적 통제정보의 소유권에 관한 세 집단(기업, 대학, 일반인)의 경영자들의 판단을 보여주고 있는 바, 세 집단은 통계적으로도 $p = 0.013$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부록 A, H7.2 참조). 전반적으로 연령이 많은 경영자일수록 매출자료를 경쟁회사에 알려주는 행위를 윤리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있다. 즉 “불법적인 행위” 또는 “비윤리적인 행위”로 응답한 경영자의 비율이 연령이 많아질수록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비록 설문지 시나리오가 경쟁사들간에 필요에 의해 정보를 주고받는 상호호혜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연령이 높은 경영자들은 그러한 행위를 달갑지 않게 여기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표 12〉를 보면, 그와는 반대되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젊은 경영자일수록 타인의 아이디어, 즉 비정형적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를 “불법적인 행위” 내지는 “비윤리적인 행위”로 간주하는 한편, 나이가 많은 경영자일수록 “정당하지는 않지만 있을 수 있는 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발견이 가지는 의미는 젊은 경영자일수록 비정형적 정보(아이디어 등)의 도용에 대해 더 높은 반감을 보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젊은 세대의 경영

자일수록 아이디어와 같은 비정형적 정보조차도 적절하게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 개인적 자산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4.4 교육수준별 판단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대학졸업자일수록 부정확한 시장정보를 보고하는 행위(〈표 13〉 참조), 재고량을 부정확하게 기재하는 행위(〈표 14〉 참조), 부정확한 입찰정보를 유출하는 행위(〈표 15〉 참조)를 윤리적 측면에서 판단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고등학교 졸업자일수록 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판단을 묻는 이 세 질문에 대해 “불법적인 행위”라고 응답한 고졸학력 관리자들의 비율이 대졸학력 관리자들에 비해서 높았다. 통계적으로도 세 시나리오에 대한 세 집단의 판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부록 A, H1.3, H2.3, H3.3 참조). 특히 〈표 13〉을 보면, 부정확한 시장정보를 보고하는 행위에 대해 “정당하지 않지만 있을 수 있는 일”로 판단한 고졸학력 경영자와 대졸학력의 경영자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 이는 상당수의 경영자들이 필요한 경우, 중요 정보조차도 왜곡되게 보고할 수 있다는 의도를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고졸 경영자와 대졸 경영자가 대조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음이 특징이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향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의 소유권에 대한

〈표 16〉에 의하면, 고졸학력 경영자의 경우 판매량 정보를 경쟁업체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불법적

〈표 15〉 운영적 통제정보의 정확성에 관한 판단

응답 교육수준	불법이다	비윤리적 행위이다	정당한 행위이다	정당하지 않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판단하기 곤란하다
고졸	60(55.6)	32(29.6)	2(1.9)	14(13.0)	0(0.0)
대졸	66(52.8)	44(35.2)	1(0.8)	13(10.4)	1(0.8)
대학원졸	8(47.1)	6(35.3)	0(0.0)	3(17.7)	0(0.0)
총계	135(53.6)	82(32.5)	3(1.2)	30(11.9)	2(0.8)

〈표 16〉 관리적 통제정보의 소유권에 관한 판단

응답 교육수준	불법이다	비윤리적 행위이다	정당한 행위이다	정당하지 않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판단하기 곤란하다
고졸	26(24.1)	33(30.6)	5(4.6)	37(34.3)	7(6.5)
대졸	21(16.8)	43(34.4)	20(16.0)	38(30.4)	3(2.4)
대학원졸	3(17.7)	6(35.3)	3(17.7)	5(29.4)	0(0.0)
총계	50(19.8)	82(32.5)	28(11.1)	81(32.1)	11(4.4)

〈표 17〉 운영적 관리정보의 소유권에 대한 판단

응답 교육수준	불법이다	비윤리적 행위이다	정당한 행위이다	정당하지 않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판단하기 곤란하다
고졸	46(42.6)	32(29.6)	4(3.7)	23(21.3)	3(2.8)
대졸	35(28.0)	49(39.2)	8(6.4)	31(24.8)	2(1.6)
대학원졸	4(23.5)	7(41.2)	1(5.9)	5(29.4)	0(0.0)
총계	85(33.7)	88(34.9)	13(5.2)	60(23.8)	6(2.4)

〈표 18〉 비정형적 정보의 소유권에 대한 판단

응답 교육수준	불법이다	비윤리적 행위이다	정당한 행위이다	정당하지 않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판단하기 곤란하다
고졸	18(16.7)	50(46.3)	14(12.9)	23(21.3)	3(2.8)
대졸	23(18.4)	71(56.8)	10(8.0)	19(15.2)	2(1.6)
대학원졸	2(11.8)	7(41.2)	3(17.7)	5(29.4)	0(0.0)
총계	43(17.1)	128(50.8)	27(10.7)	48(19.1)	6(2.4)

인 행위"로 간주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대학 및 대학원졸 학력의 경영자일수록 "정당한 행위"로 생각하고 있다. 세 집단의 판단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부록 A, H7.3 참조). 아울러 세 집단이 공동으로 "정당하지 않지만 있을 수 있는 일"으로써 상호호혜적인 차원의 관리적 통제정보의 교환을 당연시하고 있는 경영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17>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부록 A, H8.3 참조). 재고량 정보를 경쟁회사의 친구에게 누출하는 행위를 "불법적인 행위"로 판단한 고졸 경영자의 비율이 대졸 경영자보다 높았으며, 대졸 경영자일수록 그러한 행위에 대해 법적인 의미보다는 윤리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높았다. <표 18>에 의하면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행위를 "비윤리적인 행위"로 판단하는 대졸 경영자의 비율이 고졸 경영자에 비해서 높았으며, "정당하지 않지만 있을 수 있는 일"로 판단한 고졸학력 경영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비정형적 정보의 소유권에 대한 세 집단의 판단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보였다 (부록 A, H10.2 참조). 연령별 정보의 소유권에 관한 판단을 종합해 볼 때, 판매량정보 누출(<표 16>), 재고정보 누출(<표 17>), 비정형적 아이디어의 도용행위(<표 18>) 중에서 "정당하지 않지만 있을 수 있는 일"로 판단하는 경영자의 비율이 판매량정보의 누출의 경우(32.1%)가 가장 높았다. 이는 개인적 재량으로 누출하여도 가장 문제가 되지 않을 정보가 판매관련 정보이며, 아울러 조직(또는 오너)이 이러한 정보의 법적 소유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내포하고 있다. 한편 세 종류의 정보중에 "비윤리적인 행위"로 판단한 경영자의 비율이 비정형적 아이디어의 도용행위가 가장

높아 (50.8%), 문서화되지 않은 아이디어 조차 보호되어야 할 자산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매우 높았으며, 이는 대다수의 경영자가 개인이 제안한 비정형적 정보를 개인의 소유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고 추측된다.

4.5 직장경력별 판단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표 19>는 직장경력이 많은 경영자일수록 부정확한 시장정보를 보고하는 행위를 "비윤리적인 행위"로 판단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경력이 적을수록 그러한 행위를 "정당하지 않지만 있을 수 있는 일"로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경력이 짧을수록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정보를 부정확하게 보고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가능한 일로 받아드리는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경력이 짧은 젊은 직원일수록 직급이 낮아 상사에게 보고를 하거나 결재를 받아야 하는 기회가 많으므로 필요에 따라 정보를 부정확하게 보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표 20>은 세 집단의 대조되는 판단을 보여주고 있다. 재고정보를 부정확하게 기록함으로써 초과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경력이 짧은 경영자일수록 "불법적 행위"로 간주하는 반면, 경력이 많은 경영자일수록 "비윤리적 행위"로 판단하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경력이 짧은 경영자일수록 재고정보의 부정확한 기재행위와 그러한 행위의 결과를 보다 심각하게 받아드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앞서 전략적 기획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판단 (<표 19>)과 유사하게도 경력이 짧은 경영자일수록 부정확한 입찰정보(운영적 통제정보)를 경쟁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받아드리는 경향이 높았다

〈표 19〉 전략적 기획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판단

응답 경력	불법이다	비윤리적 행위이다	정당한 행위이다	정당하지 않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판단하기 곤란하다
5년 이하	6(11.8)	25(49.0)	1(2.0)	19(37.3)	0(0.0)
5 - 10년	7(7.0)	61(61.0)	0(0.0)	30(30.0)	2(2.0)
10년 이상	14(13.9)	57(56.4)	3(3.0)	26(25.7)	1(1.0)
총 계	27(10.7)	143(56.8)	4(1.6)	75(29.8)	3(1.2)

〈표 20〉 관리적 통제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판단

응답 경력	불법이다	비윤리적 행위이다	정당한 행위이다	정당하지 않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판단하기 곤란하다
5년 이하	21(41.2)	23(45.1)	0(0.0)	6(11.8)	1(2.0)
5 - 10년	40(40.0)	39(39.0)	0(0.0)	17(17.0)	3(3.0)
10년 이상	33(32.7)	52(51.5)	1(1.0)	12(11.9)	3(2.9)
총 계	94(37.3)	114(45.2)	1(0.4)	35(13.9)	7(2.8)

〈표 21〉 개인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판단

응답 경력	불법이다	비윤리적 행위이다	정당한 행위이다	정당하지 않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판단하기 곤란하다
5년 이하	28(54.9)	6(11.8)	1(2.0)	12(23.5)	4(7.8)
5 - 10년	42(42.0)	33(33.0)	3(3.0)	11(11.0)	11(11.0)
10년 이상	34(33.7)	32(31.7)	1(0.9)	29(28.7)	5(5.0)
총 계	104(41.3)	71(28.2)	5(2.0)	52(20.6)	20(7.9)

〈표 22〉 비정형적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판단

응답 경력	불법이다	비윤리적 행위이다	정당한 행위이다	정당하지 않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판단하기 곤란하다
5년 이하	5(10.0)	11(21.4)	8(15.7)	19(37.2)	8(15.7)
5 - 10년	12(12.0)	40(40.0)	15(15.0)	26(26.0)	7(7.0)
10년 이상	13(12.9)	38(37.6)	15(14.9)	26(25.7)	9(8.9)
총 계	30(11.9)	89(35.3)	38(15.1)	71(28.2)	24(9.5)

(표 생략). 즉 “정당하지 않지만 있을 수 있는 일”로 판단한 경영자의 비율이 5년 이하의 경우 17.7%; 5-10년의 경우 13%; 10년 이상의 경우 8%를 보였다. 이는 경력이 짧은 경영자일수록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정확한 입찰정보의 유출이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수반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표 21〉은 개인인사정보를 부정확하게 기록함으로써 승진심사에 피해를 준 행위에 대해 대조가 되는 세 집단의 판단을 보여주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부록 A, H4.4 참조). 이러한 행위에 대해 경력이 짧은 경영자일수록 “불법적인 행위”로 판단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반대로 경력이 많은 경영자일수록 윤리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는 경력이 많은 경영자일수록 승진하는 기회와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덜 민감한 것이 아닌가 판단되며, 경력이 적은 경영자의 경우는 이와 반대의 성향을 보인 것으로 추측된다.

〈표 22〉 역시 고객신용에 관한 출처불명의 소문(루머)을 이용하여 대출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대조가 되는 세 집단의 판단을 보여주고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지만). 경력이 짧은 경영자일수록 “정당하지 않지만

있을 수 있는 일”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인 한편, 경력이 많은 경영자일수록 그러한 행위를 “비윤리적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경력이 적은 젊은 경영자일수록 의사결정에 소문과 같은 비정형적 정보를 활용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경향을 보인 한편, 경력이 많은 경영자일수록 의사결정에 부정확한 소문을 활용하는 행위에 대해 보다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다고 추측할 수 있다.

정보의 소유권에 대한

〈표 23〉을 보면 특별 부품의 재고정보를 경쟁회사에 유출한 행위에 대해 “불법적 행위” 또는 “비윤리적 행위”로 판단한 경영자의 비율이 고경력자의 경우 가장 높은 한편, 경력이 적은 경영자의 경우 “정당하지 않지만 있을 수 있는 일”로 판단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는 경력이 낮은 경영자일수록 그러한 행위를 그릇된 것으로 판단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자주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경력이 많은 경영자일수록 민감한 운영적 통제정보의 누출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요약컨데, 정보처리에 있어 정확성과 소유권에 관한 상황(시나리오)들에 대한 경영자의 판단에 경력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표 23〉 운영통제정보의 소유권에 대한 판단

응답 경력	불법이다	비윤리적 행위이다	정당한 행위이다	정당하지 않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판단하기 곤란하다
5년 이하	15(29.4)	12(23.5)	4(7.8)	18(35.3)	2(3.9)
5 - 10년	32(32.0)	40(40.0)	4(4.0)	23(23.0)	1(1.0)
10년 이상	40(39.6)	36(35.6)	5(5.0)	19(18.8)	3(3.0)
총 계	85(33.7)	88(34.9)	13(5.2)	60(23.8)	6(2.4)

러한 발견은 조직의 정보에 대한 조직구성의 신념이 조직내 그들의 역할의 영향을 받으며, 이 역할은 경력의 함수라고 결론을 내린 Fromkin 등(1979)의 연구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4.6 총괄적 논의

〈부록 A〉는 40개 가설들 각각의 통계적 검정치(F-value)와 유의도(p-value)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다. 교육수준에 대한 10개의 가설중에 8개가 .05이하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여 4개의 독립변수들 중에 교육수준이 경영자들의 판단에 가장 빈번하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력에 대한 10개의 가설중에 2개만이 유의한 관계를 보여 경력이 경영자들의 윤리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윤리영역별로 독립변수가 3개 이상의 가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것은 업종-정확성, 교육수준-정확성, 교육수준-소유권이었다. 따라서 경영자가 고용되어 있는 업종이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경영자의 윤리적 판단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되며, 경영자의 교육수준이 정보처리의 정확성과 소유권에 대한 경영자의 판단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고정보의 부정확한 관리, 부정확한 입찰정보의 누출, 개인인사정보의 부정확성에 대해 경영자들이 “불법이다” 또는 “비윤리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83.7%, 85.7%, 69%)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으며, 재고정보의 부정확한 관리, 경영 및 영업비밀 (trade secret) 의 전용, 매출(판매)정보의 유출에 대해 수용적인 판단 (“정당하지 않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을 보인 경영자의 비율(31%, 32.3%, 29.7%) 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V. 결 론

전반적으로 업종, 연령, 교육수준 그리고 경력이 정보처리에 대한 경영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영향의 정도도 다양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업에 종사하는 경영자와 유통업에 종사하는 경영자들의 판단이 대조를 이루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여러 정보처리 시나리오에 대한 경영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의 문화, 정책, 규정과 관계 등의 제반 변수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 예를 들면, 사원들에게 정보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지침을 공지하고 교육하는 조직과 그렇지 못한 조직간에 사원들의 정보윤리에 유의한 차이를 있는 지를 조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경영자들이 시나리오를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경영자들이 시나리오의 법적인 측면과 윤리적 측면을 혼돈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예를 들면, 부정확한 입찰정보를 흘리는 행위, 경영 및 상업상 비밀을 전용하는 행위, 고객의 신용 및 거래정보를 외부에 흘리는 행위등은 정보의 정당한 사용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영자들이 “비윤리적인 행위”(31.3%, 21.8%, 30.2%)정도로 판단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참조). 이러한 경영자들의 잘못된 인식과 판단은 다음과 같은 추후 검정되어야 할 가설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설문지 시나리오를 판단할 때 공공의 이익의 관점에서 객관적인 눈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높다. 제시된 시나리오가 자신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지 또는 자신의 처

지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경영자들이 강한 윤리적 판단("불법이다" 또는 "비윤리적이다")을 적용하기도 하다가 불합리한 묵인적 태도("정당하지 않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를 보이기도 한다. 이는 정보의 공유와 배포행위는 그 행위로 인해 정보제공자가 얻을 수 있는 가시적 또는 비가시적 이익의 여부에 영향을 받는다는 Culnan (1993)과 O'Reilly와 Chatman (1986)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1) 경영 및 영업비밀을 전용한 행위, (2) 판매 정보를 경쟁회사에 누출한 행위, (3) 외부회사에 대학졸업자명단을 유출한 행위 등과 같은 몇몇 시나리오의 경우, 경영자의 응답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응답자들이 판단을 함에 있어 많은 고심을 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이러한 시나리오들은 응답자가 해당 정보를 얼마나 공적인 자산 또는 조직과 오너의 소유로 인식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는데, 사실 많은 경영자가 그러한 정보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러한 정보를 교환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팔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혼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경영자들에게 도덕적, 준법적 감각을 체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윤리헌장이나 지침을 개발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나리오 또는 사례중심의 교육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4개의 독립변수별로 집단들 사이에 상당히 대조가 되는 판단들을 보여준 시나리오가 많았으나 이러한 차이를 있게 한 근원적 이유를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공급이 부족한 부품의 재고정보를 독점하는 행위에 대해 금융업의 경영자들은 법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는 반면, 유통업의 경영자들은 단순히 윤리적 관점에서

그러한 행위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의 한 방향은 이러한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세부변수들, 예를 들면, 정보처리에 관한 조직의 정책과 문화, 기업의 경쟁적 환경, 사업의 특성 등을 규명해 가는 일일 것이다.

본 연구는 다양한 정보처리 시나리오에 대한 경영자들의 판단이 업종, 연령, 교육수준, 경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기업들은 수많은 자료와 정보를 범규에 맞으며 적절하게 처리함에 있어 직원들이 준거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처리에 대한 정책, 절차 및 규정 등을 개발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이 업종이나 직원들의 연령, 교육수준 그리고 경력과 같은 개인적 특성과 차이가 반영된다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해 주었다. 만일 기업들이 이러한 일들을 대비한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외부인이나 내부 직원의 부적절한 정보처리로 인해 재정적 손실과 대외적 신인도의 실추라는 위험에 노출될 것이며, 이러한 위험은 정보화사회가 심화됨에 따라 보다 심각해 질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업들은 소속 직원들이 정보처리의 합법성과 도덕성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이나 개인정보에 관한 법령(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등)을 교육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 역시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로 <그림 1>에서 보여 주었듯이 기업이 정보처리에 관한 정책이나 규정 및 지침을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은 그 중에 극히 일부 변수들에 대한 조사만 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정책과 지침의 개발에 필요한 포괄적인 요인들과 그러한 요인들의 상관관계에 대한 폭넓은 규명작업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경영자의 직급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서 출발하여 경쟁적 그리고 법적 환경과 같은 조직적 특성 그리고 규범과 관례와 같은 사회적 특성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설문지에서 제시된 정보유형들이 실제로 측정하고자 한 정보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지에 대한 개념적 타당성(construct validity)을 검정함에 있어 전문가들의 의견에만 의존하였다는 한계를 인정한다. 즉 표면적 타당성(face validity)에만 의존하고 있는 설문지를 사용하였기에 본 연구의 결론들을 일반화함에 있어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참 고 문 헌

- 국민일보, "서울시, 개인정보유출 물의," 98년 4월 16일, 17면.
- 조선일보, "학생성적 외부유출 명백한 사생활 침해," 95년 2월 19일.
- Andrew, K. R. (1989, Sept.-Oct.), "Ethics in Practice", *Harvard Business Review*, Sept-Oct, 39-44.
- Baker, J. A. (1991),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Proceedings of the First Conference on Computers, Freedom and Privacy, J. Warren, J. Thorwalden, and B. Koball (Eds.). IEEE Computer Society Press, Los Alamitos, CA, 42-45.
- Branscomb, A. W. (1989, May-June), "Who owns creativity", *Technology Review*, pp. 38-45.
- Constant, D. S., D. S. Kiesler and L. Sproull (1995), "What's Mine Is Ours, or Is It?: A Study of Attitudes About Information Sharing",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5:4, 400-421.
- Couger, J. D. (1989), "Preparing IS Students to Deal with Ethical Issues", *MIS Quarterly*, June 211-218.
- Culnan, M. J. (1993, Sep.), "Where Did You Get My Name?", *MIS Quarterly*, 17:3, 341-361.
- Feldman, M. S. and J. G. March (1981), "Information in Organizations as Signal and Symbol",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26, 171-186.
- Flynn, B. B., S. Sakakibara, R. G. Schroeder, K. A. Bates, and E. J. Flynn (1990, April), "Empirical Research Methods in Operations Management", *Journal of Operations Management* 9:2, 250-275.
- Fromkin, H. L., Adams, J., Ganster, D.C., McCuddy, M., Tolchinsky, P.D., and Woodman, R. W. (1979), Some employee perceptions of information practices in large organizations: property, comfort, and invasion of privacy (Working Paper 5). Unpublished Manuscript, Purdue University, Information Privacy Research Center.
- Grover, S. L. (1993), "Lying, Deceit, and Subterfuge: a Model of Dishonesty in the Workplace", *Organization Science* 4, 478-495.
- Linowes, D. F. (1989), *Privacy in America: Is Your Private Life in the Public Eye?*,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Urbana, IL.
- Mason, R. O. (1986, March), "Four Ethical Issues of the Information Age", *MIS Quarterly*, 5-12.
- Nunnally, J. (1978). *Psychometric Theory*, New York, McGraw-Hill.
- O'Reilly, C. and J. Chatman (1986),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Psychological Attachment: the Effects of Compliance, Identification, and Internalization on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1, 492-499.
- Rosenbaum, B. L. (1973), Attitude toward invasion of privacy in the personnel selection process and job applicant demographic and personality correlat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58, 333-338.
- Stone, E. F., D. G. Gardner, H. G. Gueutal and S. McClure (1983, June), "A Field Experiment

- Comparing Information-Privacy Values, Beliefs, and Attitudes Across Several Types of Organiza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68:3), 459-468.
- Stone, E. F. and D. L. Stone (1990), Privacy in Organizations: Theoretical Issues, Research Findings, and Protection Mechanism' in *Research in Personnel and Human Resources Management* 8, K.M. Rowland and G.R. Ferris (eds.). JAI Press, Inc., Greenwich., CT, 349-411.
- Straub, D. W. and R. W. Collins (1990, June), "Key Information Liability Issues Facing Managers: Software Piracy, Proprietary Databases, and Individual Rights to Privacy", *MIS Quarterly*, 14:2, 143-156.
- Warsh, D. (1989, May-June), "How Selfish Are People - Really?'," in *Ethics At Work*", *Harvard Business Review*, 23-27.
- Westin, A. F. (1991), "Domestic and International Data Protection Issues", in *How the American Public Views Consumer Privacy Issues in the Early 90's-and Why*, Testimony before the Subcommittee on Government Information, Justice, and Agriculture, Committee on Government Relations, U.S. House of Representatives,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DC, 54-68.
- Zaki, A. S. and R. C. Hoffman (1988, Fall), "Information Type and Its Impact on Information Dissemination",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5:2, 72-81.
- Zeffane, R. and B. Cheek(1995), "The Differential Use of Written, Computer-based and Verbal Information in an Organizational Context: An Empirical Exploration", *Information and Management*, 28:2, 107-121.
- "Blood Feud", *Fortune*, April 14, 1997, 46-56.
- "How safe are your secrets", *Fortune*, Sept. 8, 1997, 74-78.

부록 A: 네(4) 변수별 40개 기설과 검정값

가설 번호 정보유형x정보운리영역 H□□ ↳요인번호	경영자들의 판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요 인							
	정보유형	정보운리영역	업종별(1)		연령별(2)		교육수준별 (3)		경력별(4)	
			F value	p value	F value	p value	F value	p value	F value	p value
H1.1, 1.2, 1.3, 1.4	1. 전략적 기획정보	정보운리영역	20.87	0.007*	19.61	0.075	44.25	0.000*	12.77	0.386
H2.1, 2.2, 2.3, 2.4	2. 관리적 통제정보		22.40	0.001*	5.89	0.981	33.62	0.002*	8.86	0.885
H3.1, 3.2, 3.3, 3.4	3. 운영적 통제정보	정확성	15.32	0.050*	15.90	0.196	65.32	0.000*	7.91	0.792
H4.1, 4.2, 4.3, 4.4	4. 개인 정보		18.83	0.067	27.94	0.006*	35.12	0.000*	23.11	0.027*
H5.1, 5.2, 5.3, 5.4	5. 비정형적 정보		8.46	0.390	20.70	0.050*	11.50	0.487	17.20	0.142
H6.1, 6.2, 6.3, 6.4	6. 전략적 기획정보		17.78	0.023*	17.78	0.123	11.16	0.515	4.97	0.959
H7.1, 7.2, 7.3, 7.4	7. 관리적 통제정보		12.55	0.128	25.43	0.013*	23.60	0.023*	11.49	0.487
H8.1, 8.2, 8.3, 8.4	8. 운영적 통제정보	소유권	20.60	0.008*	10.79	0.547	29.26	0.004*	15.28	0.227
H9.1, 9.2, 9.3, 9.4	9. 개인 정보		8.15	0.419	11.03	0.527	15.04	0.239	17.02	0.149
H10.1, 10.2, 10.3, 10.4	10. 비정형적 정보		13.07	0.109	21.72	0.041*	28.82	0.004*	6.34	0.898

* p = .05 and above 수준에서 유의함

H1.1 전략적 기획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경영자들의 판단은 업종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H7.2 관리적 통제정보의 소유권에 대한 경영자들의 판단은 연령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H10.4 비정형적 정보의 소유권에 대한 경영자들의 판단은 교육수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부록 B: 축약된 설문지

다음 각 항목을 읽으시고 해당 난에 O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법규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소견에 따라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은 모두 가상적인 상황임을 밝혀드립니다.)

각 응답난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 법 행 위 : 이러한 행동은 법적으로 규제하여야 하고 발견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비윤리적 행위 : 이러한 행동을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은 없으나 최소한 비윤리적인 행위이므로 각 개인이 스스로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정 당 한 행 위 :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전혀 거리낄 이유가 없는 정당한 행위이다.

H1. [정확성, 전략적 기획정보] 금산정밀공업사의 영업사원 A는 중요한 항목 하나를 누락시켜 다소 부풀린 시장점유율 정보를 판촉전략수립을 위해 상사에게 보고했다. 그러므로 다소 위축된 지난 분기 매출액을 은폐할 수 있었다. A씨의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 불법이다 () 비윤리적 행위이다 ()
정당한 행위이다 () 정당하지 않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 ()
판단하기 곤란하다 ()

H2. [정확성, 관리적 통제정보] D통상의 창고에 근무하는 직원 A는 입하된 물품 중에 자질구레한 물품들은 정확하게 내역을 산정하지 않아, 재고가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주문하고 있는 현실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A의 이러한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 불법이다 () 비윤리적 행위이다 ()
정당한 행위이다 () 정당하지 않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 ()
판단하기 곤란하다 ()

H3. [정확성, 운영적 통제정보] L씨는 최근에 自社の 입찰경쟁에서 자신의 同郷사람에게 낙찰되도록 하기 위해 경쟁사에게 그릇된 입찰정보를 흘려주었다. L씨의 이러한 행위는?

- 불법이다 () 비윤리적 행위이다 ()
 정당한 행위이다 () 정당하지 않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 ()
 판단하기 곤란하다 ()

H4. [정확성, 개인정보] S實業에 근무하는 L은 최근에 인사과 직원이 잘못 입력한 징계기록과 근무평점으로 인해 최근 승진에서 누락되었다는 것을 한참 후에야 알게 되었다. 인사과 직원의 이러한 행위는?

- 불법이다 () 비윤리적 행위이다 ()
 정당한 행위이다 () 정당하지 않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 ()
 판단하기 곤란하다 ()

H5. [정확성, 비정형적 정보] L씨는 최근에 自社の 주요 고객의 하나인 R實業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부도설을 소문으로 듣고 상사에게 강력한 건의를 하므로 R實業에 대한 여신을 대폭 축소했다. L씨의 이러한 행동은?

- 불법이다 () 비윤리적 행위이다 ()
 정당한 행위이다 () 정당하지 않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 ()
 판단하기 곤란하다 ()

H6. [소유권, 전략적 기획정보] 미국 GM社의 구매부장이었던 로페스씨는 독일의 자동차회사 폭스바겐으로 옮겨 가면서 자신이 GM社를 위해 생각해 낸 대유럽시장 공략을 위한 구매전략자료인 '네트워크 노하우'를 폭스바겐을 위한 미국자동차산업 대응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했다. 로페스의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 불법이다 () 비윤리적 행위이다 ()
 정당한 행위이다 () 정당하지 않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 ()
 판단하기 곤란하다 ()

H7. [소유권, 관리적 통제정보] S백화점의 직원 C는 지난번 세일 후, 매장별 평당 판매액 정보를 경쟁사인 A백화점에 근무하는 절친한 친구에게 알려주었다. 물론 직원C도 친구로부터 그러한 정보를 받고 있다. 직원C의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 불법이다 () 비윤리적 행위이다 ()
 정당한 행위이다 () 정당하지 않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 ()
 판단하기 곤란하다 ()

H8. [소유권, 운영적 통제정보] K씨는 경쟁사에 있는 친구가 自社의 특정 제품의 재고량을 알고 싶어해서 일부 제품의 재고량을 알려주었다. K씨의 이러한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 불법이다 () 비윤리적 행위이다 ()
 정당한 행위이다 () 정당하지 않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 ()
 판단하기 곤란하다 ()

H9. [소유권, 개인정보] S大學에 근무하는 직원P는 최근 K전기회사(탁상용 전동 생산업체)의 사장인 절친한 친구에게 입학이 확정된 학생들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보호자의 직업을 뽑아 주어 친구의 판매사업을 도왔다. 이러한 직원P의 행위는?

- 불법이다 () 비윤리적 행위이다 ()
 정당한 행위이다 () 정당하지 않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 ()
 판단하기 곤란하다 ()

H10. [소유권, 개인정보] 최근 Q씨는 동료들과 회식하는 자리에서 품질혁신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무심코 이야기한 적이 있다. 한달 후에 그 아이디어가 채택되어 시행된다는 기사가 社報에 게재되었으나 아이디어의 제공자는 동료직원인 R씨였다. 동료R씨의 이러한 행위는?

- 불법이다 () 비윤리적 행위이다 ()
 정당한 행위이다 () 정당하지 않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 ()
 판단하기 곤란하다 ()

An Empirical Study of Ethical Judgements in Handling Information

Moo-Jin Choi*

Abstract

Workers should record, transform, and distribute many kinds of information and data to make a variety of decisions in their daily activities. In doing so, they have to exercise some degrees of discretion in dealing information that many involve some legal or ethical considerations. This research questions the assumption that workers' ethical judgement in handling various types of information can differ with industries and selected biographical factors, particularly age, education level, and job tenure.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how differently managers judge mini-cases describing behaviors of information handling according to manager's industry type, age, education level, and job tenure.

Responses of 252 managers from banks, manufacturing and retailing/service firms are analyzed and presented. Major findings are: industry types, age, educational level and job tenure are closely related to managers' judgement about information handling by varying degrees. Among four variables, the effects of educational level are most prevalent. Often managers seem to confuse the legal aspect of the scenarios with the ethical consideration.

In conclusion, companies need to develop policies, procedure, and codes of conduct that can guide their employees to exercise right judgements in various situations of information handling. Such programs need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employees that may influence their ethical judgements in dealing with information.

Key Words : Information Ethics, Information Management, Computer Crime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MIS, Keimyung University, Nam-Ku, Taegu, 705-701